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운위 안전에 인사 안전 포함시
인사혁신처장의 회의 참석 의무화〉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8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운위 안전에 인사 안전 포함시 인사혁신처장의 회의 참석 의무화(안 제 10조제2항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7. 1.

다. 회 부 일 : 2025.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전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운위 안전에 인사 안전 포함시 인사혁신처장의 회의 참석 의무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운영위원회의 회의 - 정부위원 중 운영위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함 - (신 설)	○ 운영위원회의 회의 - 정부위원 중 운영위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함 - <u>운영위원회의 안전이 인사 관련 사항인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함.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u>

현행법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기능조정, 혁신지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해임, 경영실적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공운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 공무원(차관급 또는 차장 이상)인 정부위원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의 분야에 있는 민간위원(11인 이내)으로 구성됨.

현행법²⁾은 공운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위원의 경우 공운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운위 회의에 인사 관련 사항이 안전으로 포함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을 정부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의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장의 경우 현행법령³⁾에 따라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

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장이 공운위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인사혁신처장을 규정한 것은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인사와 관련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운위 회의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인사 관련 사항이 안건에 포함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공운위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공무원법」⁴⁾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등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차관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4. 인사혁신처장

4)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

의 관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의3제1항),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인사 등의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9조의3제3항), 동법 및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사상 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19조의3제4항)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장이 공운위에 참석하여 인사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이러한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인사의 적절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⁵⁾이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과 관련된 인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사혁신처장이 관리하고 있는 인사 관련 정보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 인사혁신처장의 공운위 참석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과 관련된 인사에 인사혁신처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또한, 공운위 회의 안건을 살펴보면 2024년 본회의 개최 14회 중 인사 안건이 포함된 경우는 10회로, 회의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된 회의 비중이 7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든 회의에 참석을 의무화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참석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⁶⁾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 안건]

차수	의결 안건
1차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2차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임원인사 안건
3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
4차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안),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임원인사 안건
5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
6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임원인사 안건
7차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8차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신설타당성 심사(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 임원인사 안건
9차	- (보고 안건 2건만 있음)
10차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임원인사 안건
11차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2020·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임원인사 안건
1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

6)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모든 인사 안건 논의에 인사혁신처장이 참여하고 의견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공운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비효율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차수	의결 안건
13차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안), 2022·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임원인사 안건 등 4건
14차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u><신 설></u>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u>②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제8조 제7호·제8호·제10호에 따른 인사 관련 사항인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 ⑥</u> (생 략)	<u>③ ~ 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